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4월 28일, 김성기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5년 4월 28일 회부
- 상정일자: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5년 5월 7일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성기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과 불일치 부분을 수정하며,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범위를 확대·명확히 하여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함.
- 축제에 대한 평가 등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권고 사항 반영

나. 주요내용

- 적용 대상 축제(안 제3조)
- 군수의 책무로서 축제의 지원 시책 마련 노력(안 제4조)
- 축제심의위원회 기능, 구성 등 위원회 관련사항(안 제5조~제9조)
- 축제 운영 경비의 지원 근거(안 제10조)
- 축제에 대한 평가(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안자 : 김성기 의원
- 제안일자 : 2025. 4. 28.
- 회부일자 : 2025. 4. 28.
- 상정일자 : 2024. 5. 7.

2. 제안이유

- 상위법령과 불일치 부분을 수정하며,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범위를 확대·명확히 하여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함.
- 축제에 대한 평가 등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권고 사항 반영

3. 주요내용

- 적용 대상 축제(안 제3조)
- 군수의 책무로서 축제의 지원 시책 마련 노력(안 제4조)
- 축제심의위원회 기능, 구성 등 위원회 관련사항(안 제5조~제9조)
- 축제 운영 경비의 지원 근거(안 제10조)
- 축제에 대한 평가(안 제11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2개월 내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제26조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및 축제심의위원회 구성 등 상위 법령과 불일치 부분을 수정하여 법적 통일성을 기하고,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확대·명확히 하여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4조(군수의 책무)에서 축제의 불필요한 남발 방지 및 건전 육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규정함.
-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축제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을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고, 당연
직 위원으로 ‘문화예술과장’을 추가 신설하였음. 위촉직 위원 중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안전분야 전문가’를 신설하여 22년도 하반기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사항을 반영함.

- 안 제10조(축제의 지원)에서 축제 추진주체는 해당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개최 5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기한 내 제출하도록 규정함.
- 안 제11조(축제에 대한 평가)에서 축제 추진주체는 사후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축제종료 후 60일이내 축제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신설하고, 그 평가 방법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수정하여 법적 통일성을 기하고, 축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 보고를 한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 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 2~3. (생략)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 4. 11.>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 2~7. (생략)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①법 제17조 제1항각 호 외의 부분 전 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를 말한다.

② ~ ④ (생략)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5. 19. >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제정) 2015.12.31 조례 제2168호

(일부개정) 2017.12.01 조례 제2344호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4.06.28 조례 제2956호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창군에서 개최되는 축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문화관광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다
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지역문화·관광 발
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축제를 말한다.
- “보조금”이란 축제추진에 필요한 재정상 지원을 위하여 군에서 교부하
는 자금을 말한다.
-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 “지역축제협회”란 군에서 개최되는 각 축제위원회의 관계자로 구성되고
군에 그 현황을 제출한 평창군 축제 발전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불필요한 남발을 방지
하고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지원사업

제4조(지원대상) 축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지역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축제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축제
-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제5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 축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해야 한다.

③ 군수는 군 축제 기반시설 확충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축제협회
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등은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개최 10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경비의 적정성, 보조금 교부 목적의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제7조(보조금신청 및 정산) ① 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자는 그 축제 종료 30일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관계 규정에 맞게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8조(환수 등)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2.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때

3.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장 축제 심의위원회

제9조(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축제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창군 축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7., 2024.6.28.>

1. 문화·관광관련 단체 관계자

2. 국내 축제 전문가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평창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축제담당 주사가 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 지원신청 축제의 보조금 교부규모
2. 지원대상 축제 선정
3. 1억 원 이상의 지원축제. 다만, 국·도비지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축제 일몰제(3년을 말한다)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건강,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사후관리

제14조(평가 및 반영) ① 군수는 축제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축제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축제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정보공개) 보조사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그 축제추진 결과보고서를 그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단체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해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2168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

각각 해당 조항 중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 조례”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조례2796호, 2022.10.7.>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⑨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956호, 2024. 6. 28.>(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관광정책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성기 의원)

의안 번호	412
----------	-----

발의 연월일 : 2025년 4월 1일

발의자 김성기 의원

찬성자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의원

1. 제안이유

- 상위법령과 불일치 부분을 수정하며,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범위를 확대·명확히 하여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함.
- 축제에 대한 평가 등 자치법규 부과영향 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

2. 주요내용

- 가. 적용 대상 축제(안 제3조관련)
- 나. 군수의 책무로서 축제의 지원시책 마련 노력(안 제4조관련)
- 다. 축제심의위원회 기능, 구성 등 위원회 관련사항(안 제5조~9조관련)
- 라. 축제 운영 경비의 지원 근거(안 제10조관련)
- 마. 축제에 대한 평가(안 제11조관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다.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5. 03. 24. ~ 03. 26.(기획예산과-4835), 아래표 참조

조례안(의회안)	집행부 의견(관광정책과)	검토결과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평창군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지역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축제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제”란 평창군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지역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축제를 말한다. <u>“추진주체”란 행사·축제를 기획·추진·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단체나 기관 등을 말한다.</u> 	(수용)
<p>제10조(축제의 지원) 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u>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u>. ②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등은 해당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개최 3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조(축제의 지원) 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등은 해당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개최 5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1조(축제에 대한 평가) ① <u>군수는 축제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사업지원을 받은 축제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 축제심의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u>. ④ <u>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u></p>	<p>11조(축제에 대한 평가) ① <u>축제 추진 주체는 축제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사업지원을 받은 축제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 축제심의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u>. ④ <u>축제 추진 주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u></p> <p>(사유 : 평창군이 직접 축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평가를 받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축제를 운영하는 주체(축제위원회 등)가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p>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창군에서 개최되는 축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축제”란 평창군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지역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축제를 말한다.
- “추진주체”란 행사·축제를 기획·추진·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단체나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대상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지역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축제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축제

제4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불필요한 남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축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축제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창군 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축제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통·폐합 및 발굴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정책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1. 문화·관광관련 단체 관계자
2. 국내 축제 전문가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평창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5. 안전문야 전문가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축제담당팀

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건강,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축제의 지원)** 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 ②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등은 해당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개최 5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축제에 대한 평가)** ① 축제 추진주체는 축제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사업지원을 받은 축제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 축제심의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축제의 평가 방법은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군수가 외부 기관 등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③ 축제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제 기획의 적정성, 지역 문화 자원의 활용성 등
 2. 축제 프로그램의 수준·운영·행사진행 전반 등
 3. 투명한 예산 집행,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
 4. 지역경제 파급효과, 관광객 만족도 등
 5.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충실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개선사항 발굴 등
- ④ 축제 추진주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평창군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축제위원회에 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장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교부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10조(축제의 지원) 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등은 해당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개최 5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김성기의원
연락처	(033) 330 -2501